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세칙

## 제1장 총칙

### 제1조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선거)

본 세칙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원칙)

- ① 총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선거권이 있다.
- ③ 본 대학원 재학생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1. 현재 2, 3학기 재학 중인 자
  2. 징계를 받거나 현재 휴학을 하지 않은 자
  3. 학생회비를 낸 자

## 제2장 총학생회 선거 관리 위원회

### 제3조 (명칭)

공식적인 명칭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다.

### 제4조 (지위와 역할)

- 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로서, 다음 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사업 전반을 총괄, 관장한다.
- ② 선거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유일한 유권해석기관이다.
- ③ 시행세칙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법기관이다.

### 제5조 (구성)

- ① 선관위는 선거일 현재의 본회 집행부로 구성한다.
- ② 총학생회장이 선관위 위원장이 되고, 부회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 ③ 투, 개표 준비 등의 실무 처리를 위하여 임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후보로 출마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외된다.)

### 제6조 (해임)

-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선관위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2.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이 발견되었을 때.
- ② 선관위의 해임에 대한 권한은 대의원회에 있다. 선관위 해임에 대한 발의 및 의결은 총학생회 대의원회 안건 제출 및 의결 절차에 따른다.

제7조 (선거관리 위원장, 부위원장)

- ① 선거관리위원장(약칭 : 선관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선관위를 대표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관위 전원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선관위 내의 논의를 정리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 (이의제기)

선관위 의결에 대해 후보자는 사안 당 1회에 한하여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선관위원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제9조 (업무)

- ① 선거관련 일정 및 주요 사항들을 공고한다. 공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선거일정
  - 2. 후보등록 결과
  - 3. 투, 개표 일정
  - 4. 선거운동 규칙 위반사항 및 징계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선거기간 중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각종 선거 관련 사항을 홍보한다.
  - 1. 각 후보 포스터와 선거 홍보 포스터 부착
  - 2. 선거일정 현수막 제작 및 부착
  - 3. 투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
  - 4.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홍보 활동
- ③ 선거기간 중 각 일정의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준비한다.
- ④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선관위가 선거 공고를 해야 한다.  
설치 장소 : 운초우선교육관 1층, 4층 게시판, 사대본관 게시판, 사대신관 게시판.  
위의 장소 외에도 선관위에서 추가로 선거 공고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투, 개표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
  - 1. 선거인 명부 작성
  - 2. 투표용지 및 투표함 제작 (모바일이나 전자 투표시 제외)
  - 3. 투표소 설치 및 관리 (모바일이나 전자 투표시 제외)
  - 4.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
- ⑥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고 후보자 이외의 여러 단체의 의사를 수렴하며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⑦ 총학생회 선거 전반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활동을 한다.
- ⑧ 선거전반의 유권해석과 징계, 권고 및 이의제기의 처리를 총괄한다.
- ⑨ 기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 (선관위 권한)

- ① 시행세칙을 구체적인 부분에서 보완한다.
- ② 후보자 간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 및 조정권을 갖는다.

- ③ 선거시행세칙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
- ④ 각 후보자가 본 세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선관위가 본 세칙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⑤ 후보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후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 (선거운영비용)

- ① 선관위의 운영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충당한다.
- ② 선관위는 총학생회 예산에서 일정 액수를 각 후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 금액은 각 후보자와 협의 하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후보 등록시 포스터 영수증을 제출하고, 투표일 전날 저녁 8시까지 소정 양식의 결산보고를 영수증과 함께 제출한다.)

### 제3장 선거 일정

#### 제12조 (선거일정 및 선거 공고)

- ① 등록기간, 투표, 개표로 이루어지는 선거일정과 전자투표, 모바일투표 등 선거 방법은 총학생회 대의원회에서 확정한다. 단, 재투표 또는 연장투표에 관한 결정은 선관위에게 위임한다.
- ②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해 선거 및 투표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 ③ 부재자선거 등의 세부적인 일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④ 선거 공고는 후보자 등록 마감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후보자 등록)

- ①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 :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
- ② 후보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 20인 이상의 후보 추천서
  2. 후보자 약력, 후보자 인물사진 (해상도 300dpi 이상의 file)
  3. 재학증명서 1부
  4. 학생회비 납입 확인 1부 (선관위에서 확인)
  5. 선거용 포스터 A1사이즈 8부 (해상도 및 내용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자에 있음)
- ③ 후보자 등록 서류는 파일로도 받을 수 있다. (제출 기한 내 발송에 한함)
- ④ 단일 후보일 경우에도 반드시 전체회원에게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 ⑤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3분의 2이상 출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전공대표 중에서 한 명을 차기 회장을 선출하고, 이 경우 같은 전공이 연이어서 총학생회장에 선출될 수 없고, 현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집행부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 제14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등록 확인 공고 당일 13시부터 투표일 전 24시까지로 한다.

#### 제15조 (선거인명부 작성)

-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총학생회 회원을 기재하는 명부이다.
- ② 선거인명부의 작성 기준일은 선거 공고일로 한다.
- ③ 선거인명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 (투표 및 개표)

- ① 투표기간 :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
- ② 개표 : 제12조 제1항에 의한다.
- ③ 개표 결과 발표 및 당선 공고 : 개표 마감 직후에 하도록 한다.

## 제4장 선거운동규칙

제17조 (선거운동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을 제외한 사람
- 2.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총학생회 집행부원)
- 4. 교육신문 편집장 및 총학생회 감사 (단, 본인이 후보로 출마할 경우 제한되지 않음.)

제18조 (선거운동 장소)

- ① 선거운동의 성격을 띤 홍보물 부착, 유세, 집회는 학교 내로 한정한다.
- ②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선관위의 결정이 있을 경우 학외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제19조 (후보자간 회의)

- ① 후보자간 회의는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선관위 원장과 각 후보자로 구성된다.
- ② 선관위는 후보자간 회의를 통해 후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후보자 간의 이견을 적극 중재한다.
- ③ 선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후보자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선관위원장의 후보자간 회의 소집통고를 받고도 불참한 후보자는 불참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⑤ 선거제척에 없는 경우나 기타 협의 사안의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합의를 한 후 선관위원장에게 1시간 이내 통보하면 실행이 가능하다.

제20조 (유세)

- ① 유세는 선관위에서 결정하며 각 후보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유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후보자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1조 (홍보매체)

- ① 포스터 : 홍보 포스터는 후보자에게 제출 받아 선관위에서 같은 규격, 같은 양으로 부착한다.
- ② 현수막 : 한 후보자 당 현수막은 2개 이내로 한다.
- ③ 온라인 : 온라인 선거운동은 각 후보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선관위가 지정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운영 기간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④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종류의 홍보매체는 선관위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제22조 (부정선거운동)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2. 당선 무효 유도
3. 선거의 자유 방해
4. 직권 남용에 의한 선거 방해
5. 홍보 시설 방해
6. 투표권 및 투표 절차 방해
7. 선관위 방해
8. 허위 사실 유포
9. 후보자 비방
10. 선관위원의 선거 운동 참여
11. 금품살포
12. 사전 선거 운동

## 제5장 투표

#### 제23조 (투표일 및 투표시간)

① 투표일정은 제12조에 의거한다.

② 투표시간은 투표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단, 인력이나 제반 기후조건 등에 의해서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 제24조 (투표소 및 투표 관리위원)

① 투표소는 학우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소를 선관위가 지정, 투표소를 설치한다. (모바일투표의 경우 투표소가 없어도 된다.)

② 각 투표 관리위원은 반드시 각 후보자가 지명하고 선관위가 인정한 각 1인 이상으로 하되, 각 후보자 동수로 구성하며,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이름표를 소지한다. 한 투표함을 3인 이상의 투표 관리위원을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도 있다.

③ 투표 관리위원은 투표 행위와 절차에 관한 발언, 투표참여 호소 발언 외에 일체 발언을 할 수 없으며,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투표자 이외의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투표 시간이 종료되는 즉시 투표소 관리위원은 투표함, 잔여 투표용지와 모든 투표소 기자재를 정리하여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한다.

#### 제25조 (투표 절차 및 행위)

① 투표 행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투표자가 투표소에 도착 → 선거인명부 검색 → 관리위원이 투표자 신상 확인(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음) → 투표자 직접 서명 → 투표용지 배부 → 투표자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자가 투표함에 직접 투표

② 전자 투표, 모바일 투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거사이트 접속 → 온라인투표 준수사항 동의 → 로그인(학번+이름) → 투표인증번호 입력(포털에 등록된 전화번호) → 투표 시작 → 투표 완료

#### 제26조 (재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선관위는 그 즉시 회의를 열어 재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1. 투표함 분실
2. 선거인 명부 분실
3. 개표 전 투표함 개봉
4.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만큼 중대한 관리상 잘못이 드러날 경우

#### 제27조 (연장투표 및 결선투표)

① (연장투표) 선거 관리상의 이유로 연장투표를 실시할 경우 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하되, 기간은 본 투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 이상 실시하지 못한다.

② (결선투표)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선되지 않을 시, 최다득표 후보자와 다득표 후보자와의 표차가 오차의 두 배 내에 있는 후보자들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 제6장 개표

#### 제28조 (개표)

① 선관위는 개표장 및 개표에 관련된 제반의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② 개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개표장의 사회는 선관위원장이 본다.

④ 개표위원들은 선관위가 인정하는 사람들로 후보자에서의 지원을 받아 구성한다.

⑤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선관위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⑥ 각 후보자는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개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간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유권해석을 내린다.

⑦ 본 세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개표 관련 사항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29조 (당선 및 당선공고)

① 최다득표 후보자와 차점득표 후보자와의 표차가 오차의 수를 초과해야만, 최다득표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다.

② 개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장은 그 결과를 개표장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가능한 신속히 각 게시판을 통해 개표결과를 공고한다.

③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 최다득표자가 회장 당선자이다.

## 제7장 징계

#### 제30조 (징계절차)

- ①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관위의 결정사항(이하 선거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9조의 의결과정을 거쳐 위반의 정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선거규칙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선관위는 주의 이상의 징계에 대하여 반드시 대형대자보를 통하여 회원에게 알린다.
- ④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징계를 내림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

#### 제31조 (주의, 경고)

- ① 부정선거 및 기타 선거운동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징계를 받은 후보자가 그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후보자에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주의 2회면 자동 경고 1회가 된다.

#### 제32조 (최종경고)

- ① 경고가 2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주의 또는 경고를 받게 되면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규칙 위반의 심각성을 공개하며 최종경고를 내리고 이를 회원에게 알린다.
- ② 최종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 제33조 (후보자등록말소)

- ① 최종경고를 받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게 되거나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되면 선관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후보자등록말소를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한다.
- ② 후보자등록말소는 선관위 회의에서 의결하며 후보자등록말소안이 부결되었거나 선관위가 열리지 못했을 시에는 선관위원장은 그 의결과정을 공개하여 이를 회원에게 알린다.

#### 제34조 (이의제기)

- ① 후보자는 선관위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8시간 이내에 선관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선관위는 24시간 내에 선관위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 ③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제기할 수 없다.

#### 제35조 (당선취소)

- ① 개표 종료 후 3일 이내에 중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관위는 그 행위를 회원에게 공개한다.
- ② 위 1항에 해당된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경우는 선관위는 당선취소여부를 결정하고, 당선취소결정을 내렸을 경우 차점득표 후보자가 당선된다.

#### <부칙>

본 시행세칙은 총학생회 선거 직전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되는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